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2025. 12.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도시관리국 소관]

◆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2026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III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 현황

7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④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⑥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현황

IV

검토결과(검토의견)

18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153
----------	--------

I. 제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출자 : 마포구청장(도시관리국)

나. 제출일 : 2025. 11. 14.

다. 회부일 : 2025. 11. 18.

2.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I. 2026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마포구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총 8,746억 9,778만 8천원이며, 재정자립도¹⁾는 30.21%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²⁾는 47.02%로 전년대비 1.43% 높아졌음.
 - 일반회계는 8,385억 2,75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4.13% 증가함.
 - 특별회계는 361억 7,021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2.85% 증가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1,155억 1,27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5,729만 8천원이 감소함.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가. 2026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6 예산액	2025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74,697,788	837,332,273	37,365,515	4.46%
일반회계	838,527,572	805,280,245	33,247,327	4.13%
특별회계	36,170,216	32,052,028	4,118,188	12.85%
의료급여기금	793,426	663,164	130,262	19.64 %
마포농수산물시장	11,151,737	6,558,857	4,592,880	70.03 %
주차장	20,870,143	23,664,688	△2,794,545	△11.8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2,599	569,848	△487,249	△85.51 %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2,497,948	0	2,497,948	순증
건축안전	774,363	595,471	178,892	30.04 %

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5년도말 조성액 (d=a+b-c)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a)	증 감 (e=d-a)
		수입⑥	지출⑦		
합 계	92,623,297	22,889,486	17,402,772	98,110,011	5,486,714
1 남북교류협력기금	650,562	27,300	77,500	600,362	△50,200
2 고향사랑기금	395,112	154,735	0	549,847	154,735
3 재난관리기금	7,371,816	2,046,668	431,404	8,987,080	1,615,264
4 자활기금	1,661,213	59,210	74,010	1,646,413	△14,800
5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662,707	323,223	281,341	704,589	41,882
6 양성평등기금	2,248,659	75,000	191,600	2,132,059	△116,600
7 중소기업육성기금	4,648,119	2,501,671	5,000,800	2,148,990	△2,499,129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864,173	9,315,441	6,072,343	23,107,271	3,243,098
9 공유재산관리기금	36,162,086	1,742,022	3,500	37,900,608	1,738,522
1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945,267	44,800	43,200	946,867	1,600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184,276	230,100	298,589	1,115,787	△68,489
12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11,468,115	4,457,620	2,697,501	13,228,234	1,760,119
13 옥외광고발전기금	1,624,968	362,000	325,879	1,661,089	36,121
14 도로굴착복구기금	1,518,808	1,357,844	1,304,600	1,572,052	53,244
15 식품진흥기금	2,217,416	191,852	600,505	1,808,763	△408,653

2. 세입·세출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38,527,572	805,280,245	33,247,327	4.13%
지방세수입	184,414,741	171,255,862	13,158,879	7.68%
세외수입	68,959,536	63,542,390	5,417,146	8.53%
지방교부세	15,700,000	11,536,000	4,164,000	36.10%
조정교부금등	125,274,623	120,876,509	4,398,114	3.64%
보조금	376,741,310	357,923,572	18,817,738	5.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437,362	80,145,912	△12,708,550	△15.86%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36,170,216	32,052,028	4,118,188	12.85%
세외수입	21,795,910	23,293,613	△1,497,703	△6.43%
경상적세외수입	16,828,373	17,186,059	△357,686	△2.08%
임시적세외수입	43,735	42,188	1,547	3.6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08,624	4,779,400	△870,776	△18.22%
지난연도 수입	1,015,178	1,285,966	△270,788	△21.06%
조정교부금등	1,900,000	0	1,900,000	순증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900,000	0	1,900,000	순증
보조금	752,050	663,164	88,886	13.40%
국고보조금등	378,460	331,582	46,878	14.14%
시·도비보조금등	373,590	331,582	42,008	12.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22,256	8,095,251	3,627,005	44.80%
보전수입등	5,650,275	409,103	5,241,172	1281.14%
내부거래	6,071,981	7,686,148	△1,614,167	△21.00%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85억 2,75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52억 8,024만 5천원보다 4.13%, 332억 4,732만 7천원 증액 편성됨.

- 지방세 수입은 작년 대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공시지가 상승,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증가 등에 의해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증가로 7.68% 증가한 1,844억 1,474만 1천원이고,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53% 증가된 689억 5,953만 6천원임.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수입은 감소하는 전망이나,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은 증가 추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세액의 증가,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부담금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표준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전년 대비 36.10% 증가된 157억원임.
- 조정교부금등은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3.64% 증가된 1,252억 7,462만 3천원임.
- 보조금은 국 · 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26% 증액된 3,767억 4,131만원임.
- 아울러,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내부거래의 감소로 전년 대비 △15.86% 감소된 674억 3,736만 2천원임.
 -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5년도 예산보다 12.85%, 41억 1,818만 8천원 증액된 361억 7,021만 6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43% 감소된 217억 9,591만원이고,
- 조정교부금등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19억 원이 순증됨.

-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13.40% 증가된 7억 5,205만원임.
- 아울러,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44.80% 증가된 117억 2,225만 6천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38,527,572	100.00%	805,280,245	100.00%	33,247,327	4.13%
인건비	143,806,122	17.15%	135,097,067	16.78%	8,709,055	6.45%
물건비	50,399,370	6.01%	51,215,661	6.36%	△816,291	△1.59%
경상이전	607,580,802	72.46%	568,802,772	70.63%	38,778,030	6.82%
자본지출	30,192,253	3.60%	41,913,992	5.20%	△11,721,739	△27.97%
내부거래	1,992,006	0.24%	3,248,049	0.40%	△1,256,043	△38.67%
예비비및기타	4,557,019	0.54%	5,002,704	0.62%	△445,685	△8.91%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6,170,216	100.00%	32,052,028	100.00%	4,118,188	12.85%
인건비	3,174,130	8.78%	3,090,833	9.64%	83,297	2.69%
물건비	5,456,250	15.08%	4,870,871	15.20%	585,379	12.02%
경상이전	16,472,525	45.54%	14,455,534	45.10%	2,016,991	13.95%
자본지출	2,082,114	5.76%	1,777,429	5.55%	304,685	17.14%
융자및출자	500	0.00%	500	0.00%	0	0.00%
내부거래	8,459,875	23.39%	7,561,118	23.59%	898,757	11.89%
예비비및기타	524,822	1.45%	295,743	0.92%	229,079	77.46%

-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8,746억 9,778만 8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25년도 예산안 대비 4.13%, 332억 4,732만 7천원 증액된 8,385억 2,757만 2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5년도 예산안 대비 12.85%, 41억 1,818만 8천원 증액된 361억 7,021만 6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출예산은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는데,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경직성 예산이 소폭 증가함과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면서 증액한 반면,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면서 예비비 예산이 감소하였음.

III.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 현황

1.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904,348	2,885,071	1,019,277	35.33%
일반회계	3,129,985	2,289,600	840,385	36.70%
특별회계	774,363	595,471	178,892	30.04%

- 202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9억 43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8,507만 1천원 대비 35.33%인 10억 1,927만 7천원 증액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의 0.45%에 해당함.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549,860	2,409,780	1,140,080	47.31%
일반회계	2,675,497	1,814,309	861,188	47.47%
특별회계	874,363	595,471	278,892	46.84%

-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5억 4,9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978만원 대비 47.31%, 11억 4,008만원이 증액됨. 이는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0.41%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현황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129,985	2,289,600	840,385	36.70%
세외수입	2,825,250	2,239,200	586,050	26.17%
경상적세외수입	38,050	20,000	18,050	90.25%
징수교부금수입	38,050	20,000	18,050	90.25%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2,787,200	2,219,200	568,000	25.59%
과징금	20,000	20,000	0	0.00%
이행강제금	1,415,000	1,855,000	△440,000	△23.72%
과태료	352,200	344,200	8,000	2.32%
부담금	1,000,000	0	1,000,000	순증
보조금	304,735	50,400	254,335	504.63%
시 · 도비보조금등	304,735	50,400	254,335	504.63%
시 · 도비보조금등	304,735	50,400	254,335	504.63%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억 2,99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8,960만원 대비 36.7%, 8억 4,038만 5천원 증가하였음.
-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이 26.17%, 5억 8,605만원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이 주택상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도시계획과에서 체비지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90.25%, 1,805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부담금이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으로 10억원 순증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임.
- 보조금은 주택상생과의 시 · 도비보조금으로 504.63%, 2억 5,433만 5천원 증가하였음.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총 계	3,129,985	2,289,600	840,385
주택상생과	586,235	315,400	270,835
도시계획과	21,550	20,000	1,550
건축지원과	1,405,200	1,845,200	△440,000
부동산정보과	1,117,000	109,000	1,008,000

- **주택상생과**는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650만원을 순증하고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인 공동주택 대상 건축이행강제금(1,500만원)과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2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함. 아울러,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 및 도화우성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 지원 등의 사업 시 · 도비보조금(3억 473만 5천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083만 5천원 증가한 총 5억 8,623만 5천원을 편성함.
- **도시계획과**는 과년도 및 현년도 체비지사용료 수입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155만원이 증가한 총 2,155만원을 편성함.
- **건축지원과**는 건축이행강제금(14억원)을 △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과태료(520만원)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4억 4,000만원을 감소한 총 14억 520만원을 편성함.
-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2,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부동산 등기 해태 · 거래신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9,700만원)를 800만원을 증액 편성함. 아울러, 개발부담금은 10억원 순증하여 10억 800만원 증가한 총 11억 1,170만원을 편성함.

3.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 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675,497	100.00%	1,814,309	100.00%	861,188	47.47%
물건비	1,030,946	38.53%	908,303	50.06%	122,643	13.50%
일반운영비	648,716	24.25%	711,193	39.20%	△62,477	△8.78%
여비	116,700	4.36%	115,740	6.38%	960	0.83%
업무추진비	80,530	3.01%	81,370	4.48%	△840	△1.03%
연구개발비	185,000	6.91%	0	0.00%	185,000	순증
경상이전	183,803	6.87%	238,920	13.17%	△55,117	△23.07%
일반보전금	17,600	0.66%	14,600	0.80%	3,000	20.55%
배상금등	100	0.00%	0	0.00%	100	순증
민간이전	120,000	4.49%	120,000	6.61%	0	0.00%
자치단체등이전	46,103	1.72%	104,320	5.75%	△58,217	△55.81%
자본지출	1,460,748	54.60%	667,086	36.77%	793,662	118.97%
시설비및부대비	1,055,520	39.45%	274,768	15.14%	780,752	284.15%
민간자본이전	350,000	13.08%	350,000	19.29%	0	0.00%
자산취득비	55,228	2.06%	42,318	2.33%	12,910	30.51%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7.47%, 8억 6,118만 8천원 증가된 26억 7,54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 성질별 구성 비율 순서로 살펴보면 자본지출 14억 6,074만 8천원 (54.60%), 물건비 10억 3,094만 6천원(38.53%), 경상이전 1억 8,380만 3천원(6.87%)임.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 원)

구 分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675,497	100.00%	1,814,309	100.00%	861,188	47.47%
주택상생과	1,602,412	59.89 %	923,522	50.90 %	678,890	73.51%
도시계획과	303,746	11.35 %	119,103	6.56 %	184,643	155.03%
건축지원과	363,282	13.58 %	312,442	17.22 %	50,840	16.27%
부동산정보과	406,057	15.18 %	459,242	25.31 %	△53,185	△11.58%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1) 주택상생과

(단위:천 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주택상생과	1,602,412	923,522	678,890	73.51%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509,429	829,472	679,957	81.97%
공동주택 지원 사업	544,138	570,586	△26,448	△4.64%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497,030	503,030	△6,000	△1.19%
공동주택 안전점검	41,608	62,056	△20,448	△32.95%
민간임대주택 관리 지원	5,500	5,500	0	0.00%
주택 재개발 · 재건축사업 활성화	965,291	258,886	706,405	272.86%
재개발 · 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36,713	28,730	7,983	27.79%
보상주택 도입 · 지원	4,100	4,000	100	2.50%
도회우성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	149,370	0	149,370	순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	6,300	6,300	0	0.00%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756,000	0	756,000	순증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12,808	12,088	720	5.96%
행정운영경비	92,983	94,050	△1,067	△1.13%
기본경비	92,983	94,050	△1,067	△1.13%

- 주택상생과는 16억 241만 2천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3.51%, 16억 241만 2천원 증액 편성함.
 - 주택상생과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음.
 - ‘도화우성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

선거관리 비용	(사무관리비) 1,000만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	(시설비) 1억 3,937만원
 -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망원1구역 및 아현동 331-29번지 일대	(시설비) 7억 5,600만원
-------------------------	------------------
 - 주요 증액 내역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업 중 공공 운영비(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 설문조사 우편발송)으로 전년도보다 218만 3천원(56.69%) 증액 편성하였음.

2) 도시계획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도시계획과	303,746	119,103	184,643	155.03%
21C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242,039	55,455	186,584	336.46%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	19,608	33,656	△14,048	△41.74%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19,608	33,656	△14,048	△41.74%
미래도시 건설 추진	222,431	21,799	200,632	920.37%
역세권 주택 건립 사업	4,900	4,900	0	0.00%
경의선 지상부 복합역사 개발 사업추진	1,000	1,000	0	0.00%
DMC · 수색역 일대 개발 사업추진	760	760	0	0.00%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	5,020	4,388	632	14.4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9,671	9,671	0	0.00%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1,080	1,080	0	0.0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100,000	0	100,000	순증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추진	100,000	0	100,000	순증
행정 운영경비	61,707	63,648	△1,941	△3.05%
기본경비	61,707	63,648	△1,941	△3.05%

- 도시계획과는 3억 37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5.03%, 1억 8,46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계획과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0억 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추진’ 용역(1차 연도) (시설비) 10억 원
-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체비지 측량 수수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장 구매)를 전년 대비 △1,404만 8천원(△49.58%)을 감액 편성하였음.

3) 건축지원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건축지원과	363,282	312,442	50,840	16.27%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	10,585	10,585	0	0.00%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10,585	10,585	0	0.00%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10,585	10,585	0	0.00%
도시건축 수준향상	220,959	166,852	54,107	32.43%
구민분위 건축행정구현	36,979	36,970	9	0.02%
건축위원회 운영	34,670	34,670	0	0.00%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2,309	2,300	9	0.39%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72,880	104,842	△31,962	△30.49%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71,440	91,312	△19,872	△21.76%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1,440	1,440	0	0.00%
공공디자인 개선	111,100	25,040	86,060	343.69%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	91,600	5,540	86,060	1553.4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체험	19,500	19,500	0	0.00%
행정운영경비	131,738	135,005	△3,267	△2.42%
기본경비	131,738	135,005	△3,267	△2.42%

- 건축지원과는 3억 6,328만 2천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6.27%, 5,084만원 증액 편성함.
- 건축지원과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음.
 -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8,500만원
-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 사업 중 사무관리비(위원회 참석수당 및 용역 자문수당)를 전년도보다 106만원(23.35%)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내역은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사무관리비(특별 검사원, 법령집 구매)를 전년도보다 △1,987만 2천원(△22.11%)을 감액 편성하였음.

4) 부동산정보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부동산정보과	406,057	459,242	△53,185	△11.58%
지적정보제공	336,120	390,531	△54,411	△13.93%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41,261	44,691	△3,430	△7.67%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 공시	39,761	38,691	1,070	2.77%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1,500	6,000	△4,500	△75.00%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7,260	22,746	4,514	19.8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27,260	22,746	4,514	19.85%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103,798	143,316	△39,518	△27.57%
측량 기준점 관리	20,314	39,572	△19,258	△48.67%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7,217	7,417	△200	△2.70%
지적측량 성과검사	915	1,035	△120	△11.59%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10,175	0	10,175	순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32,907	67,904	△34,997	△51.54%
지적공부 관리	32,270	27,388	4,882	17.83%
부동산거래관리 운영	5,683	4,500	1,183	26.29%
건전한 거래신고제 정착 및 운영	5,683	4,500	1,183	26.29%
도로명주소사업	158,118	175,278	△17,160	△9.79%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58,118	175,278	△17,160	△9.79%
행정운영경비	69,937	68,711	1,226	1.78%
기본경비	69,937	68,711	1,226	1.78%

- 부동산정보과는 4억 605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1.58%, △5,31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함.
- 부동산정보과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음.
 - ‘측량 기준점 관리’ 영조물 배상사고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 (배상금등) 10만원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및 변환수수료 (사무관리비) 1,017만 5천원
 - ‘건전한 거래신고제 정착 및 운영’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68만 3천원

- 주요 증액 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을 사회적배려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66.67%), 같은 사업 기타보상금(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50만원(100%)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 내역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사무관리비(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를 전년 대비 △450만원(△75%) 감액 편성하였음.
- ‘측량 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지적도근점 설치, 측량기준점 관리)를 전년 대비 △1,935만 8천원(△50.66%) 감액 편성하였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를 전년 대비 △3,499만 7천원(△63.63%) 감액 편성하였음.
- ‘건전한 거래신고제 정착 및 운영’ 기타보상금(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을 전년 대비 △350만원(△77.78%) 감액 편성하였음.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전년 대비 △2,322만원(△47.08%) 감액 편성 하였음.

4.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774,363	595,471	178,892
건축지원과[건축안전특별회계]	774,363	595,471	178,892
세외수입	609,736	555,471	54,265
경상적세외수입	9,736	15,471	△5,735
이자수입	9,736	15,471	△5,735
공공예금 이자수입	9,736	15,471	△5,735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600,000	540,000	60,000
이행강제금	600,000	540,000	60,000
이행강제금	600,000	540,000	6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4,627	40,000	124,627
보전수입등	29,000	40,000	△11,000
잉여금	29,000	40,000	△11,000
순세계잉여금	29,000	40,000	△11,000
내부거래	135,627	0	135,627
예탁금및예수금	135,627	0	135,627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4,910	0	134,910
예탁금이자수입	717	0	717

-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건축이행강제금), 보전수입(순세계 잉여금) 및 내부거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 이자수입)로 전년 대비 1억 7,889만 2천원 증가한 총 7억 7,436만 3천원으로 편성 하였음.

5.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874,363	595,471	278,892
도시계획과[주차장특별회계]	100,000	0	100,000
21C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	100,000	0	100,000
미래도시 건설 추진 (주차장특별회계)	100,000	0	100,000
민간투자사업 추진	100,000	0	100,000
건축지원과[건축안전특별회계]	774,363	595,471	178,892
건축안전센터 운영	688,060	266,746	421,314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건축안전특별회계)	680,388	260,850	419,538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66,100	65,290	810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88,920	72,360	16,560
노후, 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457,280	123,200	334,080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56,008	0	56,008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12,080	0	12,080
예비비 (건축안전특별회계)	7,672	5,896	1,776
예비비	7,672	5,896	1,776
행정운영경비(건축지원과)	85,859	83,803	2,056
인력운영비 (건축안전특별회계)	82,259	80,203	2,056
인력운영비	82,259	80,203	2,056
기본경비 (건축안전특별회계)	3,600	3,600	0
기본경비	3,600	3,600	0
재무활동	444	244,922	△244,478
보전지출 (건축안전특별회계)	444	244,922	△244,478
보전지출	444	244,922	△244,478

- 도시계획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하주차장 적격성 조사 용역)으로 순증한 1억원을 편성하였음.
- 건축지원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노후, 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예비)’, ‘보전지출(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전년 대비 1억 7,88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7억 7,4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음.

6.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현황: 없음

V. 검토결과

□ 검토의견

- 2026년도 마포구 예산안 편성방향
 - 세입예산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지방세 공시지가 상승 등에 의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수입은 감소하나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금의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감소하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세액으로 증가가 예상됨. 아울러,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은 변상금, 과태료 및 부담금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은 각각 부동산교부세 증가와 자치구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 보조금은 국 · 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됨.
 -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되었음. 입법및선거관리 예산과 지방행정 ·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증대되었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동 · 보훈 ·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음. 아울러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음.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음.

-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1억 2,99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8,960만원 대비 36.7%, 8억 4,038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90.25%(1,805만원) 증가하여 세입 확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상생과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1,650만원)이 신규 반영되며 세외수입 증가의 핵심 요인이 되었고, 도시계획과의 체비지 사용료도 전년 대비 155만원 증가함.
 -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도 전년 대비 25.59%(5억 6,800만원) 증가하여 세입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가장 두드러진 증가 요인은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10억원)으로, 두 건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반영되면서 단일 세목 기준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음. 또한 부동산 등기 해태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과태료(총 800만원 증가)도 세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더불어, 주택상생과 시 · 도비보조금(3억 473만 5천원)은 504.63% 증가 하며 예산규모 확대에 기여했는데, 이는 신통기획 추진, 도화우성 아파트 공공지원 등 정비 · 공동주택 관련 국 · 시비 지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증가 요인과 달리 일부 세입 항목은 감액 편성되었음. 건축지원과 건축이행강제금이 △4억 4,000만원(△23.72%) 감소하여 세입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47.47%, 8억 6,118만 8천원이 증가된 26억 7,549만 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부동산정보과(△5,318만 5천원)의 감편성에도 불구하고 주택상생과(6억 7,889만원), 도시계획과(1억 8,464만 3천원), 건축지원과(5,084만원)의 증액 편성으로 재개발·재정비 사업,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주택상생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음. 감액 요인은 전적으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축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감사 전문가 수당이 2,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임. 이는 감사 횟수 축소 또는 점검 방식 변경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44만 8천원 감액됨. 사무관리비 중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3,7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2,600만원 감소하여 전체 예산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감독을 통해 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798만 3천원 증액되었음. 증액 요인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감정평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인건비가 일제히 증가한 데서 발생한 것임.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전문적 심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공공운영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 우편발송 세대수가 크게 증가하여,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도화우성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은 신규 사업으로, 1억 4,937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음. 이 중 대부분은 시설비(1억 3,937만원)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 비용이 전액 편성됨. 또한 사무관리비(1,000만원)로 선거관리 비용이 반영되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사업임을 알 수 있음. 시·구비 50:50 매칭 구조가 적용된 점도 특징임.
-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사업 또한 2026년에 전액 신규로 7억 5,6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됨. 시설비로 망원1구역(3억 9,190만원)과 아현동 331-29번지 일대(3억 6,410만원)에 편성됨.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음.
 - 망원1구역
 - 1) 2023. 11. 22.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조건부) 선정
 - 2) 2024. 7. 18.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행
※ 용역비 : 5억 5,990만원, 준공기한 : ‘26. 1. 26.
 - 3) 2025. 8. 27. :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재자문)
 - 4) 2026. 10. : 정비구역 지정

- 아현동 331-29번지 일대

- 1) 2025. 4. 11.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주민 → 구)
- 2) 2025. 7. 30.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천(구 → 시)
- 3) 2025. 8. 26. : 보조금(1억 1,554만 5천원) 교부 신청(구 → 시)
- 4) 2025. 8. 27.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조건부) 선정
- 5) 2026. 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404만 8천원(△41.74%)이 전액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되었음. 세부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열람공고료 등 각종 인건비·공고비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특히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는 전년도 1,293만 6천원 규모였으나 2026년에는 전액 미반영되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은 도시공간에 대한 신규 수요에 부응하고 마포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액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됨.
-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추진’ 신규 사업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 용적률 체계 개편 및 한시적 용적률 완화(‘25.5월 /8월)에 따라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9개소)³⁾ 높이계획 재정비 필요로 시설비(1차년도 용역, 1억원)을 편성함.

3) 아현1·2지구, 대홍지구, 마포지구, 성산지구, 신촌지구일대, 연남동지구, 상수역세권, 홍대앞지구

- 건축지원과의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예산은 전년 대비 △1,987만 2천 원(△21.76%) 감액한 7,144만 원을 편성하였음. 주된 감액 요인은 사무관리비 중 특별검사원 수당이 200건 → 153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임.
-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 사업은 건축지원과 사업 중 가장 큰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554만 원에서 9,160만 원으로 8,606만 원(1553.43%)이 증가함. 가장 큰 증가 요인은 연구개발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8,500만 원)이 신규 반영됨. 이는 마포구 단위의 공공디자인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연구가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전체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 수당 증가로 106만 원 증액되었으나, 전체 사업 증가분 대비 비중은 크지 않음. 본 사업은 신규 정책 수립 연구 착수에 따른 대규모 예산 확충이 핵심임.
- 부동산정보과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예산은 150만 원으로 전년 600만 원 대비 △450만 원(△75.00%) 대폭 감액됨. 이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4건 규모)가 2026년에 1회(150만 원)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연도별 부과대상 건수 차이가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결과임.
- ‘측량 기준점 관리’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훼손 지점 보수 및 신규 필요 지역에 추가 설치를 통해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6년도 예산은 2,03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triangle 1,925만 8천원(\triangle 48.67%) 감액되었는데, 측량기준점 관리 위탁 건수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소가 주요 감액 요인임. 전년 2,708점 기준 단가가 1,100점 기준 단가로 축소되어 예산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⁴⁾ 변환 추진’은 지역측지계에 위치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성과를 정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1,017만 5천원이 신규 편성됨. 「지적 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14. 7. 30.)」에 따라 2021년 도해지역 전체 세계측지계변환 후 미변환된 지역을 변환하려는 것임.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및 변환수수료 $[(50필지 \times 242,000원 \times 1.1 \times 0.7) + (10도과 \times 78,000원 \times 1.1)]$ 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는 3,290만 7천원으로 전년 6,790만 4천원 대비 \triangle 3,499만 7천원(\triangle 51.54%)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데이터 품질관리 위탁사업비(5,500만원 → 2,000만 3천원)가 크게 줄어든 영향임.
- ‘지적공부 관리’는 3,227만원으로 전년 2,738만 8천원 대비 488만 2천원(17.83%)이 증가였는데, 증액의 주요 요인은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사업(개별지적도 정비)에서 900만 3천원이 반영되며 품질개선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전전한 거래신고제 정착 및 운영’은 2026년도에 신규로 분리 편성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

4)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하여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위치 기준

점검’ 사업 내 일부 세부 항목으로 운영되었음. 2026년부터는 이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와 별도 분리해 독립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교란과 투기행위 예방 기능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26년도 예산안은 568만 3천원이 편성되며 전년 대비 118만 3천원 (26.29%) 증가함. 주요 증액 요인은 사무관리비 468만 3천원 신규 편성으로, 이는 거래신고 정착을 위한 현수막(93,600원×17개소×2회), 리플렛 (250원×2,000매×3건) 제작 등 홍보 기반 확충에 예산이 집중된 것이 특징임. 이러한 구성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교육 중심의 예방적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기타보상금(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은 4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50만원 감소(△77.78%)하였음. 이는 과거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감소한 데 따른 실적 기반 조정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사업은 포상금 중심에서 사전 예방·홍보 중심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예산안 편성의 특징을 종합하면,
 - 주택상생과와 도시계획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함께,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관련 예산의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된 점이 특징임. 이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얹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민 의견 청취 · 합의 형성 등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마포구만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재건축 · 재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주민 정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해 보임. 특히 재건축 · 재개발 사업 등의 대형 계획 및 용역 사업(신통기획 정비 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높이계획 재정비 등)은 타 지자체에서도 용역 남발과 활용도가 저조하여 감사 및 의회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으로 중복성과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 용역의 경우 이미 서울시에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이 변경 되었기에 중복성 여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겠음.
 - 건축지원과의 시설물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정기 점검 외 상시적으로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건축 안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도시 경관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한 인 · 허가 및 사용 승인업무에 외부 전문가에 의존한 소극적 업무보다는 전직원이 전문가적 자세로 임하여 도시 경관과 함께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겠음.

- 특히, IoT · AI 등 기술 연계 사업 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흐름에는 부합하여 성공사례도 있으나, 유사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적하였듯이 활용률 저조, 데이터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행성 · 전시성 사업 유무를 평가해야 할 것임.
-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실적 기반의 조정과 필수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도로명주소사업 등 큰 변동 없이 유지하되, 측량 기준점 관리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등 전년 대비 단가 · 위탁 물량이 감소한 항목은 대폭 감액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반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과 같이 신규로 추진되는 기반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관리와 거래신고제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편한 점이 특징임.
- 도시관리국은 특성상 대규모 시설사업과 용역사업이 많은데, 사업별 연계성은 높이고 중복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역이 준공되면 주요 내용과 활용 계획 등을 우리 위원회 업무 보고 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적 업무 공유와 사업평가가 이루어져 예산 편성과 심의가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소요내역, 사업추진시기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조례로 설치하고 있는바, 그 사업별 목적이 특별회계에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주차편익시설 건설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지하주차장) 적격성 조사 용역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음.
 -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지원과 소관으로, ‘건축물 예방적안전 관리강화’ 사업에서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노후·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1,953만 8천원(160.83%)을 증액 편성한 6억 8,038만 8천원을 편성 하였음. 예비비는 전년 대비 30.12% 증가하여 767만 2천원, 행정운영 경비(기타직 보수)는 2.56% 증가하여 8,5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전지출(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4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집행 잔액 및 이자로 전년 대비 △2억 4,447만 8천원(△99.82%) 감소하였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김 자 영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